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19, No. 8, August 2014
www.ksci.re.kr
http://dx.doi.org/10.9708/jksci.2014.19.8.161

공학 계열의 법학 교육 효율화를 위한 인식 조사

오 태 곤*

A Survey on the Perception for Legal Education Efficiency of Engineering Department

Tae-Kon Oh *

요 약

이 연구에서는 공학 계열의 법학 교육 효율화를 위한 인식조사를 시도하였다. 이는 최근 들어 우리 대학들에서, 특히 공학인증과 관련하여 공업법규 등의 교과목을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 이수케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공학계열 학생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법학 교육의 방법을 탐색하기 위함이다. 연구 방법은 선행 연구들에서 추출하여 조작한 설문을 중심으로, C대학교 공과대학의 재학생 180명을 최초 표본으로 선정하여, 이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19명의 자료를 제외한 161명의 자료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선정, 분석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학계열의 법학 교육의 경우 여성 보다는 남성이, 재수강 학생 보다는 처음 수강한 학생이, 법과사회 및 법학개론 등의 기초 법학 과목을 수강했던 경험이 있는 학생이, 전공 분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각각 수업 집중도 및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Keywords : 공학 계열, 공학 교육, 공학 인증, 법학 교육, 기초 법학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the perception for legal education efficiency of engineering department. This study is to search for more efficient legal education method to engineering department's students, reflecting the reality that our universities have appointed the subjects - related with engineering accreditation such as engineering law - as compulsory subjects. The method of this study is that with questionnaire extracted the advanced researches, it selected the 180 undergraduates of engineering college in C university as original samples, chose 161 data as final efficient samples except for 19 untrustworthy respondent, analyzed and drew the result. The specific results are as follows. In case of legal education in engineering department, it was found

•제1저자 : 오태곤
•투고일 : 2014. 7. 30, 심사일 : 2014. 8. 1, 게재확정일 : 2014. 8. 10.
* 조선대학교 법과대학(College of Law, Chosun University)

that women rather than men, the students first taking the subject more than those retaking the subject, the students who have taken the basic law subjects such as law and society, an introduction to law, and the students who hope to get a job in their major field showed the higher class concentration degree and satisfaction degree.

▸ Keywords : Engineering Department, Engineering Education, Engineering Accreditation, Legal Education, Basic Law

I. 서 론

21세기 정보화, 국제화, 전문화 등을 지향하는 지식기반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정신을 실천하는 일은 교육의 모든 분야도 예외일 수는 없으며, 특히 현재 공학계열 교육의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세계적인 국제 표준(Global Standard)의 열풍에 발맞춰 공학교육인증제를 앞 다퉈 도입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공학교육인증제는 공학 교육에 있어서 세계 유수 대학들과 상호 교류하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한국 공학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발판이며, 우리 기술자들이 즉 기술자들이 특정 국가에서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나 자신의 기술을 펼 수 있고, 또 관련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공학계는 1999년 8월 30일에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을 창립하여, 이후 2013년 1월 공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되어, 2013년말 기준 88개 대학 573개 프로그램을 인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1]. 특히 대학에서 공학인증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교과목 구성을 살펴보면, 공업법규 등과 같은 법학과목을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여 이수케 하고 있는데[2], 이는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를 통치 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이상 당연한 귀결로 생각된다.

한편 현재 우리 법학교육은 일종의 '패러다임(paradigm)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는 사법개혁과 법학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제도의 시행을 통해 법학교육 제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과정에서 많은 대학들은 법학전용도서관, 모의법정 등 교육시설과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판·검사 등을 전임교원으로 대폭 충원하여 교육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가 이뤄졌으며, 교수방법론에서도 문답식 교수법이 케이스 메써드(Case Method)를 중심으로 도입되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이 연구에서는 공학 계열의 법학 교육 효율화를 위한 인식조사를 시도하였다. 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최근 들어 우리 대학들에서, 특히 공학인증과 관련하여 공업법규 등의 교과목을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여 이수케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공학계열 학생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법학 교육의 방법을 탐색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 여기에서 추출, 가공한 설문을 중심으로, 본인이 법학 교육을 담당한 C대학교 공과대학의 재학생 180명을 최초 표본으로 선정하여, 이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19명의 자료를 제외한 161명의 자료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선정, 분석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다만 공학교육과 법학 교육, 특히 공학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법학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이 연구 결과에 대한 일반화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향후에도 계속 확대될 공학 계열에 있어서의 보다 효율적인 법학 교육을 위한 시발점이 되고자 한다는 것에 이 연구의 의의를 두었다.

II. 이론적 배경

1. 법학교육

법학(法學, science of law)은 사회생활 관계에 있어서의 법적 현상, 법적 사실 등 법에 관한 것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이론적·체계적으로 고찰하는 학문으로, 철학(philosophy)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과학(social science)의 한 분야이다[3]. 이러한 법학은 인간 사회생활에 있어 마찰과 충돌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 장치인 법을 연구 대상으로 가치와 정의 등을 성찰하는 학문이며, 서양에서는 신학(theology), 의학

(medicine) 등과 함께 일찍부터 학문으로 정비되어 왔다. 또한 인간 사회에서 바르게 사는 원리와 지식을 연구하는 정의의 학문이다[4]. 법학 교육은 교수자(敎授者)를 대상으로 법학을 교육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법학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법학을 공부하는 학습자들의 '논리적(論理的) 사고(思考)' 훈련을 통하여 논리적 법 해석과 적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5]. 법학 교육은 다른 사회과학의 교육과 다른 특성이 있는데, 이는 법학은 실용적이며 사회 현실에 곧바로 투영되기 때문에, 법학의 교육에 있어서도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야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법학 교육은 다른 분야의 학문과 같이 기본 교양 교육 또는 이론 교육이 선결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법 규범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전문 교육 또는 실무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법학 교육은 이론 교육과 실무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자 중에 어느 편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법학 교육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집중의 형태는 전적으로 해당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법체계 및 법조인 양성 시스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전자에 집중하는 형태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법조인을 선발한 이후 재교육을 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대학에서의 교육이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법학교육 방법론

2.1. 강의식 교수법

일반적으로 강의식 교수법이란, 한사람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통해 가르쳐주는 것을 말한다[6]. 교수는 강의를 할 때, 강의 내용을 서술(narration), 기술(description), 설화(telling)등의 방법을 통하여 미리 준비한 지식이나 정보를 학생에게 제시하고, 학생들은 그 지식이나 정보를 받아들이는 하향식 의사전달구조를 가진다.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교수는 전달하고 학생들은 수신하는 일방적 의사소통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강의식 교수법은 개념을 제시하고 발전시켜, 강의를 마칠 무렵 주요한 쟁점을 정리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강의식 교육법에서 교수는 지식을 전달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수의 지적기능이 중시되며, 더불어 교수의 가치관이 의도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되기도 한다[7]. 강의식 교육법은 가장 오래된 교수법으로 규범학을 다루는 법학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었지만 동시에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는 한 명의 교수가 다수 학생들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간 수준 학생의 이해 정도 및 학습 속도에 맞추어 수업을 진행하는 결과 상위 수준의 학생들은 지루함을 호소하게 되고, 하위 수준의 학생들은 학습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의욕 상실감을 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8]. 하지만 강의식 교육법은 오늘날까지도 현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교수법인데, 그 이유는 말로 설명하는 것이 인쇄된 글자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며, 강의 중 설명을 반복하거나 수정할 수 있어 교육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법학은 대륙법계 판덱텐 시스템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법률용어의 개념과 용례를 잘 이해하는 것이 법률을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강의식 교육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시청각적 교육법, 구안법, 문제해결학습법 등과 같은 교수방법이 개발되었다.

2.2. 문답식 교수법

법학 교육에 있어서 문답식 교수법은 주로 판례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러한 문답식 수업은 그 개념이나 정형적인 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주로 미국의 로스쿨 교수들을 중심으로 '법률가처럼 생각하기(thinking like a lawyer)'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교육방법으로[9], 교수의 질문에 대하여 학생이 대답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학생들이 법을 단순히 암기하기 보다는 법을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을 도와주어, 학생들 스스로 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특히 이 교수법은 "법을 알고 싶으면 스스로 지적인 노력을 기울여라"는 주문이 라고 할 정도로 판례를 통한 문답식 교육법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참여를 강조한 교육방법이다[10]. 원래 미국에서의 법학교육방법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는 강의와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도제식 교육(apprenticeship)으로 이루어졌는데[11], 이러한 교육방법으로 인해 당시의 법학은 대학에서 과학(science)이 아니라 단순한 기술(skill)로 인식되고 있었고 법과대학의 위상도 상당히 낮게 취급되었다[12]. 이에 1870년 하버드 대학교의 랭델 교수가 판례를 통한 문답식 교육법을 도입하여 법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법학도 과학임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즉, 도서관은 법학교육을 위한 실험실이고 법의 일반원칙은 상급법원의 판례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학교육에 일대 혁신을 단행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교수법을 우리나라의 주된 법학교육방법으로 도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판례를 통한 문답식 교육법은 성문 법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가르칠 수 없어, 우리 법체계를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13].

2.3. 문제 중심 학습법

문제 중심 학습법(PBL; Problem Based Learning)은 1969년 캐나다 맥매스터 의과대학의 배로우(Barrows)교수가 기존의 대학 강의에서 느꼈던 교육 환경의 비현실성, 부실성 등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만든 학습 방법으로, 90년대

초에 구성주의 이론과 접목하면서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단과대학으로 확산되어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아 보편적인 교육방법이 되었으며[14], 최근에는 초등 및 중등교육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15]. 이 교수법은 판례를 통한 문답식 교수법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주입식 강의 방식을 지양하고 문제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16]. 문제 중심 학습법에서의 교수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습의 진행을 촉진하는 역할 혹은 안내자의 역할과 동료학습자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17].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제 중심 교육법의 도입 초기에 교수는 학생들에게 주어질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학습 자료를 수집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학습 자료는 주어진 특정 문제의 해결에만 필요한 자료가 아니라 주어진 문제 해결과 연결되어 다른 유사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자료로서 폭 넓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문제 중심 학습법에 의한 교육이 진행되어 학생들이 익숙하게 되면 필요한 자료를 찾는 것도 학생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교수는 학생들이 진행하는 과제수행의 과정을 모니터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는 학생들의 연구를 바로 잡아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18]. 문제중심학습법은 학생들이 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법 기술에 대한 감각을 증대시키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문제중심학습법은 학생들에게 법적 문제를 정치적·경제적·사회적·철학적 측면에서 접근하도록 도와주며 헌법·민법·상법·행정법등으로 구분된 법률 분야의 엄격한 장벽을 허물어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변호사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19]. 하지만 이 교수법은 학생들이 투자하는 시간에 비하여 배우는 양이 적으며[20], 적절한 문제를 준비하기 위한 교수자의 부담이 크며, 학생들이 문제해결과정을 잘 알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상 학생들이 문제해결과정을 잘 모르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2.4. 시뮬레이션 교수법

시뮬레이션(Simulation) 교육법은 학생들에게 사실관계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각각 그 사건의 원고 측 변호사와 피고 측 변호사, 그리고 판사와 배심원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사건을 연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업시간에 직접 변론하게 하는 방법이다[21].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해당 사건의 법률적인 분석이나 토론에 개인적인 관심이나 동기를 부여하며 법정 토론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준다[22]. 법학교육에 적용된 시뮬레이션 교육법의 대표적인 예는 모의재판(Moot Court)으로, 학생들은 변호사의 역할 뿐만 아니라 검사나 판사 및 배심원의 역할까지도 담당한다. 이 교육법을 좀 더 폭넓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뢰인과의 최초 상담에서부터 관계인에 대한 인터뷰, 소 제기 이전의 전략 수립, 소장 작성, 배심원 선정, 변론 및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론과 중재 등 소송의 전체 과정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23]. 시뮬레이션 교육법은 이론과 실무를 통합하여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학생들은 단순히 듣거나 본 것보다는 실제로 경험해보는 것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24]. 시뮬레이션 교육법을 시행하였던 교수들도 학생들에게 학습동기가 명확하게 부여되었고 적극적인 수업 참여가 증가하였으며 교육적인 가치가 높다고 하였다[25]. 하지만 그러나 시뮬레이션 교육법도 문제 중심 학습법의 단점과 비슷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이 교육법은 학생들이 투자하는 시간에 비하여 배우는 지식의 양이 적다는 비효율성과 적절한 준비 및 평가를 위하여 교수에게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3. 공학교육

3.1. 개 념

공학(엔지니어링)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그 기원은 적어도 기원 전 3,000년 경 문명의 여명기에 나일강과 메소포타미아 계곡에서 나타났던 건축가들의 작업 속에서부터 시작되어, 고대 이집트는 실용적 기술과 특히 로마인들은 실제적인 건물이나 다리를 세우거나 조직하는 일에 엔지니어링을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였다[26]. "Engineering"이라는 용어는 아마 2000년쯤 전의 로마군대의 성곽을 공격할 때 사용한 일종의 파성퇴(破城槌)인 "ingenium"라는 군대용구와 이러한 기계들의 조작병인 "ingeniator"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공학학문(engineering science)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벨리도(Belidor)가 1729년에 저술한 그의 책 "엔지니어의 과학(La Science des Ingenieurs)"에서였다. 과학, 기술, 공학의 분화 발전은 현대사회를 과거 사회와 구분 짓는 중요한 특징이다. 그러나 과학, 기술, 공학을 구별하여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이를 간단히 정의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 이유는 과학, 기술, 공학은 역사 속에서 형성되고 사회 문화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차별화된 정의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공학은 "자연, 인간, 사회, 인조물 등 제반 대상과 주변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낸 문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해결 방법을 탐구하고 활용하려는 학문, 그리고 그 실현기술"을 일컫

는다. 즉, 과학적 지식과 기술적 수단, 그리고 인간의 지성과 감성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인류사회가 봉착한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 학문인 것이다. 공학은 이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과학과 기술을 이용하되 기존의 과학지식 범주에 예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공학 지식 체계를 형성하여 사용한다. 또 공학은 문제해결을 위해 인조물을 구현하는 것을 중요시하며, 공학적 지식은 이에 관련된 설계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이론의 형성과 설계를 실제 적용하는 전 과정을 포함한다.

공학교육은 공학(engineering)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형태로서, 주요개념과 이론을 학습하는 강의식 교육과 실제적 기술을 경험하게 하는 실험·실습 교육, 설계교육, 현장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7]. 이러한 공학교육도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기업 맞춤형, 전공 강화형, 기본소양 강화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28]. 먼저, 기업 맞춤형 공학교육은 기업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형태로서 일례로 삼성전자는 성균관대학교의 정보통신공학부 내에 반도체시스템공학 전공과 대학원 과정에 휴대폰학과를 설립하였으며, 연세대학교에도 대학원에 휴대폰 학과를 개설하여 운용하고 있다. 또한, 제주대학교에는 EMLSI트랙, DAUM트랙, 중부발전트랙, STX엔진트랙, 트랜스코스모스트랙을 개설하여 교과과정 공동 개발과 산업체 임직원과 학생 간 매칭을 통해 전공지식과 기술 교류를 추진하는 등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공 강화형 공학교육은 백석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산업체 주문형 교육과정이나 한국정보통신대학교나 관동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요자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통한 교육과정 개설 등이 있으며, 건실한 공학기초 교육을 위해 물리, 화학, 수학 및 컴퓨터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공학교육 자체의 기본 소양을 중시하는 형태와 공학교육에만 국한되지 않고 영어 구사 능력, 글쓰기 등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 시키는 교육을 들 수 있다.

3.2. 공학교육의 교육목표

김태유, 이병기, 김도연(1998)은 장래 국가발전과 번영에 이바지할 엔지니어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공학교육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른 엔지니어의 소요자질을 감안할 때, 공학교육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목표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29]. 첫째, 엔지니어로서의 기본 자질을 교육하여 현실성 있는 문제파악 능력과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둘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교육하여 인성 및 사회성을 도야시키고 장차 건설적인 민주주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 자질을 함양시켜야 한다. 셋째, 대학의 교육목표에 부합되는 특성화된 전문자질을 교육하여 산업 및 사회의 요구에 맞춰 대학별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부합되는 특성화된 전문자적 자질을 함양시켜 주어야 한다. 넷째, 자율적 자기발전을 추구하는 능동적 자질을 교육하여 누구나 한 가지 전문 분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도록 전문성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다섯째, 시대환경 변화를 선도하는 진취적 자질을 교육하여 종합적 안목을 키워주고, 인근분야간, 관련 교과목간 통합교과목 제공으로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3. 공학교육과 공학인증제

공학인증제는 전공 강화형 공학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많은 공과대학에게서 호응을 얻고 있는 제도이며, 최근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기업체에서 신입 사원의 채용 시에 가산점을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제도이다. 이는 공학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시대적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창의성과 실무능력, 복합 학제적인 팀워크(teamwork)능력 및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엔지니어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을 중심으로 세계 표준에 맞는 공학교육을 시행하여 국내 공과대학 졸업생들이 해외에서도 엔지니어로써 인정받게 하자는 것이다. 참고로 미국은 공학교육 인증을 통하여 국제적인 상호 인정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ABET의 국제적인 상호 인정 확대 노력은 주로 '워싱턴 협정(Washington Accord)'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워싱턴협정은 1980년 미국의 ABET와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영국, 뉴질랜드의 공학회가 실질적 동등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협의를 시작하여, 1988년 '6개국 협정'이라는 초안을 만들고,1989년 11월 30일 프라하에서 발표되었다. 워싱턴 협정은 공학교육의 국제 상호 인정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교육에 대한 정보 교환,공동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엔지니어의 상호 이동 등에서 공동보조를 취하며 교육의 질적 향성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30].

우리나라도 2007년에 워싱턴 협정의 정회원(signatory member)으로 승인되어 현재 가입한 총 12개 국가와 함께 우리나라의 공학교육이 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III. 연구설계

1. 표본의 선정 및 수집 방법

이 연구에서는 공학계열의 법학 교육 효율화에 미래 비전을 탐색하기 위해서 공과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법학 과목을

수강한 공학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정 도구는 관련 문헌들을 참고하여 총 25문항(5점 척도, 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을 도출하였다. 이를 요인 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여 공학계열의 법학교육 인식을 총 15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G광역시 C대학교 공과대학의 재학생 중, 2014년 1학기 중 '공업 법규'를 지정 필수 교과목으로 수강한 재학생 180명을 최초 표본으로 선정하여 2014년 5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진행하였다. 총 18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18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이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19명의 자료를 제외한 161명의 자료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선정, 분석하였다.

2. 자료 분석

2.1. 표본의 특성

먼저 성별 분포는 남성이 66명(41.1%), 여성이 95명(58.9%)이었다. 다음 재수강 여부와 관련해서, '재수강이다'가 27명(16.5%), '처음 수강한다'가 134명(83.5%)였다. 다음으로 고교 시절의 법과사회를 포함하여 공업 법규의 수강 이전에 C대학교에서 교양 선택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법과 현대사회, 법학 개론 등의 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90명(55.6%),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71명(44.4%)이었다. 마지막으로 향후에 본인의 전공 분야와 관련하여 취업을 희망하는지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이 97명(60.3%), '아니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64명(39.7%)이었다.

2.2.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공학계열 학생들의 법학 교육에 대한 인식은 척도 순화과정을 통하여 일부항목을 제거하였다. 먼저,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측정 변수는 구성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해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채택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문항 선택기준은 고유값(eigen value)은 1.0 이상, 요인적재치는 0.4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변수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문항 제거시 알파값(alpha if item deleted)을 이용하여,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는 문항을 반복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 결과, 총 25개 문항 중 10개 문항을 제거하고 15개 문항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 연구의 측정변수인 법학교육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의 신뢰수준은 Cronbach α값이 0.67-0.93 사이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1. 표본의 특성
Table 1. Traits in Samples

구 분		빈도(%)
성 별	M	66명(41.1%)
	F	95명(58.9%)
재수강 여부	Y	27명(16.5%)
	N	134명(83.5%)
기초 법학 과목 수강 여부	Y	90명(55.6%)
	N	71명(44.4%)
전공 분야 취업 희망 여부	Y	97명(60.3%)
	N	64명(39.7%)

IV. 공학계열 학생들의 법학 교육 인식

1. 법학교육에 대한 인식

공학계열 재학생들의 법학교육에 대한 인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법학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Table 2. Students' Awareness toward Legal Education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설1	1 (0.62%)	0 (0%)	87 (54%)	45 (27.9%)	41 (17.28%)
설2	0 (0%)	0 (0%)	92 (57.2%)	53 (32.9%)	16 (9.9%)
설3	0 (0%)	1 (0.62%)	97 (60.3%)	42 (26.1%)	21 (12.98%)
설4	2 (1.24%)	1 (0.62%)	85 (52.8%)	49 (30.4%)	24 (14.94%)
설5	0 (0%)	0 (0%)	79 (49.1%)	47 (29.2%))	35 (21.7%)
설6	1 (0.62%)	1 (0.62%)	83 (51.6%)	51 (31.7%)	25 (15.46%)
설7	4 (2.48%)	5 (3.1%)	85 (52.8%)	28 (17.4%)	39 (24.22%)
설8	0 (0%)	0 (0%)	92 (57.2%)	53 (32.9%)	16 (9.9%)
설9	0 (0%)	3 (1.86%)	99 (61.5%)	36 (22.4%)	23 (14.24%)
설10	2 (1.24%)	3 (1.86%)	81 (50.3%)	48 (29.8%)	27 (16.8%)
설11	0 (0%)	0 (0%)	75 (46.6%)	42 (26.1%)	44 (27.3%)

2. 변인들에 따른 법학 교육 인식 차이

공학계열의 법학 교육의 경우 여성 보다는 남성이, 재수강 학생 보다는 처음 수강한 학생이, 법과사회 및 법학개론 등의 기초 법학 과목을 수강했던 경험이 있는 학생이, 전공 분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각각 수업 집중도 및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공학계열 재학생들의 변인들에 따른 법학교육에 대한 인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변인들에 대한 법학 교육 인식 차이
Table 3. Difference in Legal Education Awareness toward Variables

		성 별		재수강 여부		기초 법학 과목 수강 여부		전공 분야 취업 희망 여부	
		M	F	Y	N	Y	N	Y	N
설1	평균	3.56	3.68	2.75	3.23	2.82	3.25	3.36	3.35
	t/p	2.771/.054		2.327/0.551		2.725/.105		3.447/.128	
설2	평균	2.75	2.85	2.79	2.88	3.63	3.58	3.69	3.25
	t/p	2.359/.122		3.117/.228		3.885/.307		2.367/.280	
설3	평균	3.39	3.25	3.85	3.85	3.66	3.28	3.97	3.64
	t/p	2.72/.307		2.558/.102		2.364/181		3.407/.562	
설4	평균	3.58	3.47	3.77	3.48	3.85	3.96	3.51	3.86
	t/p	3.458/.507		3.529/.713		2.852/.105		3.332/.145	
설5	평균	3.75	3.46	3.90	3.47	3.66	3.28	3.74	3.27
	t/p	2.381/.285		3.447/.116		4.325.148		2.852/.557	
설6	평균	3.45	3.65	3.51	3.68	3.25	2.97	3.53	3.87
	t/p	2.81/.302		2.858/.371		3.557/.225		3.417/.109	
설7	평균	3.27	3.32	3.82	3.70	3.47	3.81	3.35	3.27
	t/p	2.935/.115		2.329/.130		2.752/.101		2.358/.116	
설8	평균	3.29	3.51	3.74	3.65	3.58	3.80	3.49	3.58
	t/p	3.357/.207		3.237/.332		6.857/.604		2.327/.228	
설9	평균	3.45	3.87	3.54	3.47	3.46	3.59	3.64	3.39
	t/p	3.317/.117		5.521/.106		3.752/.821		5.465/.327	
설10	평균	3.29	3.66	3.72	3.39	3.28	3.52	3.26	3.53
	t/p	3.567/.723		5.157/.129		3.722/.129		8.758/.109	
설11	평균	3.80	3.57	3.28	3.76	3.68	3.54	3.49	3.42
	t/p	5.326/.105		7.828/.117		4.952/.115		2.905/.128	

V. 결 론

이 연구에서는 공학 계열의 법학 교육 효율화를 위한 인식 조사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공학계열의 법학 교육 인식에 대한 25문항의 설문을 도출한 이후, G광역시 C대학의 공학계열 재학생들 중 법학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연구의 결과 공학계열 재학생들에 대한 법학교육은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대부분의 학생이 법학 과목의 수강이 다른 전공과목의 수강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조사되었고, 수업에의 참여도 및 몰입도 또한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여성 보다는 남성이, 재수강 학생 보다는 처음 수강한 학생이, 법과사회 및 법학개론 등의 기초 법학 과목을 수강했던 경험이 있는 학생이, 전공 분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각각 수업 집중도 및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에는 여학생, 재수강자, 기초 법학 미이수자, 전공 분야 미취업 대상자들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수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전체 공학계열 학생 중에서 특정 지역의 소수의 학생들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였다는 점과, 연구주제에 대한 선행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 등으로, 이 연구 결과에 대한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향후에 계속 확대될 공학 계열에 법학 교육에 있어서 보다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http://www.abeek.or.kr/htmls_kr/contents.jsp?menu_l=1&menu_m=8.; 2014.6.1.Searching.

〔2〕 http://www.abeek.or.kr/htmls_kr/contents.jsp?menu_l=2&menu_m=16.; 2014.6.1.Searching.

〔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83634&cid=44412&categoryId=44412.; 2014.6.19. Searching.

〔4〕 Choi, Jong-Go, 『Compression to Current Law』, SNU Press, 1990, pp.3-4.

〔5〕 Choi, Jong-Go, 『Law and Life』, 4th ed., Parkyoungsa, 2004.

〔6〕 Lee, Sung-Ho, 『Teaching Methodology』, Hakjisa, 2000, p.63.

〔7〕 Park, Min, *Pedagogical Methods in Legal Education*,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Vol. 18, No. 2, Jun, 2006., p.76.

〔8〕 *Supra Note 7*, pp.76-77.

〔9〕 Lawrence M. Friedman, 『A History of American Law, 2d ed.』, Touchstone, 1985, p.615.

〔10〕 Juan Cicero, 『Piercing the Socratic Veil: Adding an Active Alternative in Legal Education』, 15 Wm. Mitchell L. Rev. 1989, pp.1011-1013
〔11〕 Myron Moskovitz, *Beyond The Case Method: It's Time To Teach With Problems*, 42 J. Legal Education 1992, p.242.
〔12〕 *Supra Note 11*, pp.242-243
〔13〕 Edwin W. Patterson, 『The Case Method in American Legal Education: Its Origins and Objectives』, 4 J. Legal Educ. 1951, pp.1-23
〔14〕 Howard S. Barrows & Robyn M. Tamblyn, 『Problem-Based Learning: An Approach to Medical Education』, New York, 1980, p.5.
〔15〕 *Supra Note 11*, pp.247-248.
〔16〕 W. Pallie & D.H. Carr, *The McMaster Medical Education Philosophy in Theory*, Practice and Historical Perspective, 9 Med. Teacher, 1987, p.59.
〔17〕 Luann Wilkerson & Grahame Feletti, *Problem -Based Learning: One Approach to Increasing Student Participation*, 37 New Directions for Teaching & Learning, 1989, pp.51-55.
〔18〕 *Supra Note 7*, pp.85-86.
〔19〕 *Supra Note 7*, pp.87.
〔20〕 Gregory L. Ogden, *The Problem Method in Legal Education*, 34 J. Legal Educ. 1984, pp.654, 664.
〔21〕 Howard L. Oleck, *Adversary Method of Law Teaching*, 27 J. Legal Educ. 1975, p86.
〔22〕 W. H. Bryson, *The Problem Method Adapted to Case Books*, 26 J. Legal Educ. 1974, pp.594-598.
〔23〕 Stephen N. Subrin, *Teaching Civil Procedure While You Watch it Disintegrate*, 59 Brook. L. Rev. 1993, pp.1155-1176.
〔24〕 Lloyd C. Anderson and Charles E. Kirkwood, *Teaching Civil Procedure with the Aid of Local Tory Litigation*, 37 J. Legal Educ. 1987, p.215.
〔25〕 Margaret M. Hanzen & Thomas L. Hanzen, *Simulation of Legal Analysis and Instruction on the Computer*, 59 Ind. L. J. 1984, pp.195-203.
〔26〕 http://tsp7.snu.ac.kr/prof/eng_edu/eng_edu2.html.: 2014. 6.19.Searching.
〔27〕 Buch, N., & Wolff, T., *Classroom Teaching Through Inquiry*. Journal of Professional Issues in Engineering Education and Practice, 126, 2000, pp.105-122.
〔28〕 Kwon, Kab- Yeon., *Comparative Study on Curriculum of Accreditation Criteria of Engineering Education - Focused on Curriculum of Electronic Engineering*, Master degree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9, pp.4-6.
〔29〕 *Supra Note 26*.
〔30〕 *Supra Note 28*, p.6.

저 자 소 개

오 태 곤
2001: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2003: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2005: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현 재: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외래교수
관심분야: IT Convergence
Email : t6713@naver.com